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20호

「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2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의 경력단절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특별 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 확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근속 독려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2호)
- 나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호)
- 다.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(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)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4호)
- 라.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의 경우 5일의 모성권 보장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5호)

마.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입영 전일과 당일 각1일로 확대함(안 제10조제6호)

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10조제3호, 안 제10조제7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7일(월)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양식: 붙임 참조

나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thgus524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정소식 →조례안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)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나 호

「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2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」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,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응시수수료 환급 요건 및 면제 대상 확대

-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으로 환급(안 제6조제2항)
-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(안 제6조제3항, 별지 제1호서식)

나.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

-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(안 제8조)

다.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

-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등도 시험위원 위촉 자격을 제한(안 제11조제4항)
-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2)

라. 각종 시험 및 임용별 자격증 요건 사항 정비

(안 별표4, 별표5, 안 별표5의 2, 안 별표5의 3, 안 별표 9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7일(월)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양식: 붙임 참조

나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thgus524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정소식 → 조례안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)

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